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29

발의연월일: 2021. 3. 8.

발 의 자:유경준・김태호・권명호

김용판 • 조수진 • 송석준

이 용・박성중・백종헌

황보승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생업·질병·취학 등의 사정에 의해 이전하는 경우, 상속한 주택으로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의 경우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과 달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장기간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투기수요 억제라는 규제의 목적에 배치되지 않으므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사업과의 균형을 맞추고 투기목적과 관련이 낮은 현행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4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생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②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	
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	
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	
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	
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	
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	
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	
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	
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
	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
	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
	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